

내국소비세법 특강 유인물 (부가가치세법)

1.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구 분	내 용
일반소비세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다단계거래세	생산과정에서 소비과정에 이르는 전 유통단계에서 과세
소비형 부가가치세	소비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에 과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접세	납세의무자(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 담세자
물세	담세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사실에 과세
소비지국 과세원칙	국가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위한 제도
면세제도	세부담의 역진성

2. 전단계세액공제법과 전단계거래액공제법

구 분	내 용
전단계세액공제법	매출액 × 세율 - 매입세액
전단계거래액공제법	(매출액 - 매입액) × 세율

3. 국경세의 조정

구 분	내 용
소비지국 과세원칙	① 재화의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방식 ② 영세율 제도 적용
생산지국 과세원칙	① 재화의 생산지국에서 과세하는 방식 ② 재화의 수출에 대하여 과세 후 반출

4.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구 분	영세율	면세
목적	소비지국 과세원칙	역진성 완화
면세정도	완전면세	부분면세
매출세액	0% 과세	면세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법인세,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모든 의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및 대리납부의무인 협력의무

5. 납세의무자

구분	내용
사업자	사업 목적이 ①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②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③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구분	내용
영리성	사업자는 영리·비영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세부담의 전가를 위한 세목으로 영리성은 무관하다.
독립성	독립성이란 인적시설과 물적시설로 나눌 수 있다. 인적시설이란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즉, 타인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다.
계속·반복성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동종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6.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 유형별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과세기간
간이과세자	① 1월 1일 ~ 12월 31일
일반과세자	① 제1기 : 1월 1일 ~ 6월 30일 ② 제2기 : 7월 1일 ~ 12월 31일
신규 사업자	① 사업 개시일 ~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②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신청한 날 ~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폐업 사업자	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 폐업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시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②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7. 신고납세지

납세지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장소이며 과세관청이 과세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장소이다.

구분	사업장의 범위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	법인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다단계판매업	·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기타	·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고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직매장 · 하치장 · 임시사업장

구분	사업장 여부	내용
직매장	사업장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 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며 이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하치장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시사업장	기존 사업장에 포함	·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 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신고된 장소로 기존사업장에 포함한다. ·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8.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1. 발급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기한을 5일 이내 에서 연장
2. 사후관리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1) 신고일당일	①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2일 이내	②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 변경하는 경우
3. 등록거부	종류변경, 사업장 이전,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 등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4. 직권등록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9.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구분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효과	각 사업장별 납부(환급)세액을 합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환급) 가능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및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경정결정은 각 사업장별	총괄납부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승인 여부	신청	신청
주된사업장	① 법인 : 본점 또는 지점 ② 개인 : 주사무소	① 법인 : 본점 ② 개인 : 주사무소
신청	① 기존사업자 :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① 기존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 ②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포기신고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10. 과세거래

(1) 재화의 개념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구성된다.

(2) 공급의 범위

공급은 실질적 공급과 간주공급으로 구분된다.

구분	내용
실질적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소유권을 이전 · 즉, 대가를 받고 재화를 인도하거나 사용하게 한 것이다.
간주공급	· 자신이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 등 · 즉, 대가를 받지도 않고 재화를 인도하거나 사용하게 한 일정한 내역에 대하여 간주공급으로 구분한다.

(3) 재화의 간주공급

1) 자가공급

- ㉠ 면세사업 :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 고유의 사업목적(판매용, 운수사업용 등)에 사용하지 않고 비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
- ㉢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 :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구분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
일반적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봄 (세금계산서 발급)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경우	원칙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봄

2) 개인적 공급

: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개인적인 목적이거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3) 사업상 증여

: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

4)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

5) 재화의 간주공급 시 세금계산서

재화의 간주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4) 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① 역무를 제공하거나 ② 재화·시설물 및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즉, 대가를 받는 유상공급만이 과세된다는 점에서 재화의 공급과는 다르다.

(5) 용역의 간주공급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11. 재화의 공급시기

구분	공급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위 이외의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유형별 공급시기

구분	공급시기	
현금·외상·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중간지급조건부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반환조건부판매 · 동의조건부판매 그 밖의 조건부 및 기한부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간주공급	면세전용,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개인적 공급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직매장 반출	재화를 반출하는 때
	사업상증여	재화를 증여하는 때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폐업일
무인판매기에 의한 공급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수출재화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원양어업, 위탁판매수출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12. 용역의 공급시기

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유형별 공급시기

구분	공급시기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 중간지급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그 밖의 용역의 공급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3. 공급시기의 특례

① 선발행세금계산서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②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 도래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③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장기할부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전력·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④ 수입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14. 영세율과 면세 비교

구분	영세율	면세
개념	일정한 과세거래에 대하여 0% 세율을 적용함 ①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를 면제 ②매입세액을 전액환급	일정한 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①거래징수 없음 ②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다음 단계에 전가됨
취지	소비지국 과세원칙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사업자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아님
성격	완전면세 - 전단계의 부가가치 : 이미 공제 받은 세액을 취소하여 환급	부분면세 - 전단계의 부가가치 : 이미 과세된 세액을 무시(환급x)
적용범위	주로 수출 재화에 적용함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적용함
사업자의 협력의무	영세율사업자도 납세의무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각종 협력의무를 진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각종 협력의무를 지지 않는다.

15. 과세표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구분	공급가액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간주공급 과세표준

구분	공급가액
자기 생산·취득재화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 면세사업의 전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전용	해당 재화의 시가 다만,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간주시가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재화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재화

구분	공급가액
원칙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취득가액에 일정금액을 더하는 경우	취득가액 + 일정금액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경우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16. 대손세액공제

구분	내용
공제 기한	· 일반과세자가 과세 재화 ·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공제세액으로 한다.
대손세액공제	· 대손세액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text{대손세액} = \text{대손금액} \times \frac{10}{10}$ </div>
제출 서류	·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손 사유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 한다.

17. 세금계산서

구분	내용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
임의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자의 주소 ②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③ 단가와 수량 ④ 공급 연월일 등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의무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② 선택 : 그 외의 사업자
(1) 발급시기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2) 전송기한	그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1) 원칙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발급하는 것

(2) 공급시기 전 발급

①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ex) 장기할부판매, 전력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④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대가를 받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3) 공급시기 후 발급

구분	내용
·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p>예시) 1월 1일 ~ 1월 31일의 경우 → 1월 31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월 10일까지 발급</p> <p>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p> <p>예시) 1월 1일 ~ 1월 15일, 1월 16일 ~ 1월 31일 경우 → 1월 15일, 1월 31을 작성연월일로 2월 10일까지 발급</p>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예시) 1월 15일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분 누락 시 → 1월 15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월 10일까지 발급	

18. 의제매입세액

구분	내용
적용대상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간이과세자 제외)
과세재화 ·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어야 한다.
제출 서류	· 원칙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 예외 -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만 제출한다.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p>· 예정신고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제대상금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 확정신고기간)으로 정산한다.</p> <p>① 예정신고시 공제세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5px auto;"> $\text{의제매입세액} = \text{예정 과세기간의 공제대상금액} \times \text{공제율}$ </div> <p>② 확정신고시 공제세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5px auto;"> $\text{의제매입세액} = \text{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대상금액} \times \text{공제율} - \text{예정신고시 이미 공제받은 세액}$ </div>
의제매입세액의 추징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①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② 면세사업,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 소비하는 경우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19. 결정, 경정

구 분	내 용
1. 결정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함
2. 경정	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다음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0. 간이과세자

구 분	내 용
대상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적용시기	1역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의 금액에 미달 혹은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과세유형의 변경 통지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재고납부세액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
매입세금계산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매입액(공급대가) × 0.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	MIN(①, ②) ① (발급금액 + 결제금액) × 1.3% ② 연간공제한도 : 1,000만원 한도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간이과세 포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